

상담영어학부 교육과정 운영 내규

제1조(목적) 본 내규는 대신대학교 상담영어학부의 설립이념과 교육목표를 구현하고 이에 맞는 인재상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학과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및 이를 위한 행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학부 교육과정연구위원회) ① 학부의 교육과정의 편성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학부 교육과정 연구위원회를 운영한다. 위원회는 학부 교수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학생대표,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.

② 상담영어학부 교육과정연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.

1. 교육목표, 인재상, 전공능력, CDR 등의 개선 연구
2. 교육과정의 주기적 개편에 관한 연구
3. 교육수요자의 요구와 성과 환류 방안에 관한 연구

③ 학부 교육과정연구위원회의 조직과 활동 범위 및 임기는 학부 교수회의에서 정한다.

제3조(내규의 적용 범위) 이 내규는 대신대학교 제 규정의 범위에서 적용되며, 이 외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학부 교수회의에서 의결한다.

제4조(교육과정) ① 상담영어학부의 교육목표, 인재상, 전공능력은 다음과 같다.

1. 교육목표: 영성을 바탕으로 창의적, 국제적, 헌신적 감각을 겸비한 상담심리 및 영어전문인 인재양성
2. 인재상: 1) 탄탄한 상담심리이론으로 무장된 실무 중심형 전문상담인 및 전문상담사역을 위한 인재
2) 탁월한 영어구사력과 글로벌 마인드를 갖춘 실무 능력에 뛰어난 융합형 인재
3. 전공능력: 1) 상담심리전공: 전공지식활용(융합)역량, 상담관련 분야에서의 자기주도역량, 공동체역량 강화
2) 영어구사력, 인문학과 타학문 분야 간의 융합적 능력, 비판적·창의적 문제해결능력

② 교육과정은 전공능력을 균형있게 제고하여 학부의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편성되고 운영되어야 한다.

③ 교육과정은 학년별/수준별 역량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편성하고 운영하여야 한다.

④ 이에 대한 개선은 상담영어학부 교육과정연구위원회에서 제안하여 학부 교수회의,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확정한다.

제5조(CDR) ① 학생들의 전공능력을 제고하고 학부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진로개발로드맵(CDR)을 운영한다

② 학부의 전공능력을 반영한 대표 진로와 핵심 직무는 다음과 같다.

1. 대표진로:

상담심리전공: 각계층의 상담전문가, 각종 교육현장에서의 상담 및 교육, 기업체 및 공공기관 등

영어전공: 사교육현장의 영어교사, 영어교육 관련 회사, 공기업 및 일반회사

2. 핵심직무:

상담심리전공: 상담 및 관련교육,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, (상담)지식 및 기술 활용

영어전공: 각종 영어교육, 교육기획, 무역 및 비즈니스행정

③ 교육과정은 설정된 대표 진로와 핵심 직무 습득이 수월하도록 편성되고 운영되어야 한다.

④ 지도교수와 경력개발교수는 학생들이 진로개발로드맵(CDR)에 따라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상담하고 지도하여야 한다.

⑤ 이에 대한 개선은 학부 교육과정연구위원회에서 제안하여 학부 교수회의,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확정한다.

제6조 (졸업논문대체) ① 학생들의 전공능력을 제고하면서 학과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졸업에 필요한 졸업논문이외에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대체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1. 졸업고사 2. 학과교육목표에 부합한 과제 및 자격(학과회의에서 정함)

② 지도교수는 학생들이 졸업을 차질없이 이수할 수 있도록 상담하고 지도하여야 한다.

③ 졸업논문 면제요건:

1) 영어전공: 토익 기준 점수 이상 취득

- 2022학번 이후 기준 점수: 600점

2) 상기 자격증 외 공인자격증은 학부교수회의에서 심사 후 대체 인정가능

3) 4대보험 처리가 되는 재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

제7조 (평가 및 환류) ① 학생들의 전공능력을 제고하고 학부 전공교육의 지속적인 질 관리를 위해 교육과정 운영을 평가하고 환류한다.

② 학부 교육과정 연구위원회는 다음의 사항들을 검토하고 전공 교육과정 운영 개선안을 마련한다.

1. 수업개선보고서(CQI)

2. 전공 교육과정 성과평가

3. 전공능력 진단

4. 전공별 교수법 공동체

5. 교육만족도

6. 그 외 구성원의 의견 수렴 결과

③ 학부 교수회의에서 학부 교육과정 연구위원회의 운영개선안을 검토하고
전공 교육과정 편성계획에 반영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내규는 2022년 03 월 14 일로부터 시행한다.

② (내규의 개폐) 이 내규의 개정과 폐지는 학과 교수회의를 거쳐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